

### 3 부령 작성례

- 기본 조
-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부령 작성례는 현행 부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부령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목적

제○조(목적) 이 규칙은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부 소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의 선박
2.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여객선
4.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 허가 신청

제○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할/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营业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조제○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확인서(법 제○조제○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조제○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营业을 하려는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허가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법 제○조제○항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그 영업허가관리대장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조제○호 및 제○호가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2. 영 제○조제○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영업허가증과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
- ④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허가증

**시설기준**

제○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처분기준 - 정지, 취소**

- 제○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등록 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일 때에는 등록 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일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둘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등록신청**

- 제○조(★★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업의 등록기준에서 시설·장비를 보유하게 하는 업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영 제○조제○항제○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적은/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적은/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 등본을 포함한다.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법 제○조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조제○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5. 외국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공장등록원부 등본

### 신고

제○조(★★업의 신고)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함으로써/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확인서(법 제○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증

1 소개

2 용어

3 문장

4 작성례

5 어문규정

**시설·설비기준**

제○조(시설 및 설비기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조제○항에 따른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과징금**

제○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연체금**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영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가산금이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

**부칙 - 행정처분기준 경과조치**

제○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3 ★★업자 및 ★★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진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않는다.

제◇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XX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제복 경과조치**

제○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면허증 경과조치**

제○조(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부칙 - 각종 경과조치**

제◇조(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처분기준 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를 하고,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 시설기준 중**

[별표 ○]

**업종별 시설기준(제○조 관련)**

## 1. ★★업의 시설기준

-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건물 안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 시설·설비기준 중**

[별표 ○]

**★★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조 관련)**

## 1. ★★업

- 가.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해야 한다.
-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탈의실, 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그 설치 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공간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 라. 욕조의 물을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